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입안 계획서

1. 행정규칙명

□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」(관세청고시 제2023-37호, '23. 4. 27.)

2. 개정사유

- □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(이하 "FTA관세법 규칙") 개정(3.22. 공포(예정))에 따른 고시 정비
 -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 서류 등 신설*
 - * 지침으로 운영중인 관련 규정을 FTA관세법 규칙 및 고시로 상향입법
 -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절차 간소화*
 - *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전산으로 조회 가능한 서류의 제출 생략(예: 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) '신청사유서'(재발급·정정발급 시) 및 '원산지증명서 원본'(정정 시) 제출 생략
- □ '원산지간이확인물품*'의 신규 발굴 및 지정**
 - * C/O발급 신청시 '원산지소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' 대신 '국내제조확인서'를 제출할 수 있는 물품(국내 제조·가공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정 가능)
 - ** 전통주(청주, 탁주) 및 섬유류 등 RCEP(일본) 수출 상위품목 중 FTA활용 실익이 있는 9개 품목
- □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사전심사 운영상 미비점 정비
 - ㅇ 증명서발급기관의 신청서류 반려 및 범칙조사의뢰 절차 정비
 - ㅇ 원산지 등 사전심사 반려사유 정비
- □ 「행정조사기본법」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현지확인 업무절차 정비*
 - * 사전통지, 연기신청 외 의견제출, 조사원 교체신청 등 고시 미반영사항 준용규정 신설

3. 주요 개정내용

- □ FTA관세법 규칙 개정(§10의2) 내용을 반영하여 고시 정비
 -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 등 신설(§26⑦·⑧)
 - 수입신고필증 외 수입·수출 물품 간 동일성 확인을 위한 서류* 규정
 - * 보세구역 반입신고서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, 수입 시 국제운송서류
 - RCEP 협정의 수입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*, 관세차별 품목의 경우 원산지 국가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** 규정
 - * 양수도계약서, ** 최초 수출국에서 작성된 자재명서세, 제조공정도, 원재료구입명세서 등
 - 원산지증명서 신규 발급신청 시 첨부서류 간소화(§26④)
 - 증명서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의 경우 제출 생략*
 - $_*$ (현행) C/O 발급 신청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제출 → (개선) 발급기관에서 전산조회, 인증서 사본 제출 생략
 - 원산지증명서 재발급·정정발급 신청절차 간소화 등(§34·§35)
 - '신청사유서'제출을 생략*하고 '원산지증명서 발급(재발급· 정정발급)신청서'에 직접 기재토록 양식 개정*
 - * 별도 양식 없이 기업의 공문으로 제출하던 사유서 제출을 생략
 - ** 재발급 신청서에 분실, 도난, 훼손 등 사유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신청사유란 신설
 - 전자문서 방식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 시 **원산지 증명서 워본 제출**을 **생략**하여 기업의 편의 제공

□ '원산지간이확인물품*'의 신규 발굴 및 지정 등(별표2의2)

- 전통주(청주·탁주) 및 인조섬유 티셔츠 등 FTA 활용 실익이 높은 9개 품목을 원산지간이확인물품으로 신규 지정*
- * 원산지간이확인물품: [개정 前] 317개 품목 → [개정 後] 326개 품목
- ㅇ 한자어를 고유어로 순화하여 법령용어 정비*
- * (HSK 8481.80.2000(탭·코크와 트랩)) 유로의 개폐나 → 유로를 여닫거나

- □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사전심사 운영상 미비점 정비
 - 증명서발급기관의 **신청서류 반려** 및 **범칙조사의뢰 절차 정비**(§24)
 - 신청서류의 보정요구 시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도록 반려 사유 정비
 -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관 외 발급기관*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범칙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
 - * 상공회의소·대한상공회의소 등
 - 원산지 등 **사전심사 반려사유 정비**(§50)
 - 신청인이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원산지 등의 사전 심사를 반려할 수 있도록 반려 사유 정비
- □ 「행정조사기본법」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현지확인 업무절차 정비
 - 현지확인 연기신청 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결정하여 통보(§29③)
 - 현지확인을 위한 사전통지, 연기신청 이외에 의견제출, 조사원 교체 신청 등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 상 조사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마련(§29⑤)

□ 조문 및 법령용어 정비

o (조문정비) 상위법령 위임규정에 맞게 조문 정비

고시 조항	개정내용
§34①(재발급 관련)	규칙 제10조 <u>제8항(</u> 서류보완 관련) → <u>제9항(</u> 정정.재발급 관련)
§37①(전자발급 관련)	규칙 제10조 <u>제10항</u> (재발급.정정발급 관련) → <u>제11항</u> (전자문서방식 관련)
§34①·§35①제1호	규칙 별지 제3호서식 원산지증명서 <u>발급신청서</u> → <u>발급(재발급·정정발급)신청서</u>

o (법령용어) 부적절, 문맥의 명확한 해석을 위한 용어 정비

고시 조항	개정내용
§24②(조사의뢰 관련)	<u>고의</u> 또는 <u>허위로</u> → <u>속임수</u> 또는 <u>부정한 방법으로</u>
§35①3호(정정발급 관련)	정정사유를 <u>입증할 수 있는</u> 서류 → 정정사유를 <u>입증하는</u> 서류
§35④(정정발급 관련)	원산지증명서 대체하여 <u>재발급</u> → 원산지증명서 대체하여 <u>발급</u>

- 4. 규제대상 여부: "해당 없음"
- 5.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: "붙임"
- 6. 시행 일자 : 2024. 4. 00.

7. 의견제출 방법

- ㅇ 제출기한: 2024. 3. 28. 까지(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)
- 담당자: 백종철사무관(042-481-7968), 권영미주무관(042-481-3234)
- ㅇ 제출방법: 이메일(kym626@korea.kr)